접 수	의안과 - (20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청소년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방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2부
2. 청 원 서 2부. 끝.

2018년 1월 21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건 명	청소년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방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8년 1월 21일

(소개의견)

청원인 신민기 외 29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8년 1월, 제 20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방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들은 부당한 상황을 쉽게 마주합니다. 지난 2016년 울산에서, 청소년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10% 이상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듭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근로자 임금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규 위반사례가 406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정상화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노동권에 대한 존중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8조의2(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①사용자의 임금 지급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나 차별적 처우라도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법적 조치는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시에는 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시에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시에는 제109조에 따른다.

제12장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68조의2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또는 **제6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 이유

최근 들어 점점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며 청소년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택배 상하차, 서빙 등으로 다양하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장들은 청소년 근로자보다 우월한 법률 지식과 나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체불임금 32만원에 대해 지불을 요구하는 청소년 근로자에게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주는 보복성 행위를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당시 최저임금 5580원이 아닌 5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현 사회에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가 만연해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30일 여성가족부가 7월 20일(목)부터 28일(금)까지 전국 34개 지역(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노동법규 위반 사례인 406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고지 93건,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 ▲임금미지급 14건,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 ▲금품청산 6건,▲기타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안이 변변히 마련되어있지 않고, 법안이 마련되어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애매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다.

본 청원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의 개선과, 그들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 고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소년기는 어느 개인을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견인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그들의 중간자적인 존재는 법률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거나, 보호를 명목으로 권리를 제한받거나, 사각지대에 처하곤 한다. 본 위원회가 신설하고자 하는 법률안은 청소년들이 받는 차별적 처우와 임금 미지급 등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체 점주들의 범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체불 혹은 최저임금 미지급 등 다양한 권익 침해 사례에 경종을 울리며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초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정상화를 제도화하는 법안 신설을 청원한다.

2. 주요 골자

근로기준법 제68조의2를 신설하고, 제109조를 개정한다.

*신설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8조의2(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①사용자의 임금 지급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나 차별적 처우라도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법적 조치는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시에는 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시에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시에는 제109조에 따른다.

*개정
제12장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68조의2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또는 제68조의 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8조의2(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①사용자의 임금 지급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나 차별적 처우라도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법적 조치는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시에는 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시에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시에는 제109조에 따른다.
신 설	
제12장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장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68조의2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또는 제6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